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·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12. 31. ~ 2020. 2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3조제3항”을 “법 제3조제4항”으로, “보수수준 및 지급실태”를 “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3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----------법 제3조제4항----------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)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.	제4조(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) ----------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-----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72